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530
----------	-------

발의연월일 : 2023. 6. 8.

발의자 : 정희용 · 김희곤 · 구자근  
서병수 · 김예지 · 이 용  
김석기 · 권명호 · 최춘식  
김상훈 · 김영식 · 이태규  
태영호 · 윤창현 · 황보승희  
의원(15인)

### 제안이유

최근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하여 농업 및 전후방 산업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린바이오산업이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 및 농업 및 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그린바이오산업의 개념을 명확히하고,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벤처 · 창업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한편, 그린바이오 관련 데이터 활용 촉진, 제품 공공 우선구매제도, 육성지구의 지정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그린바이오산업 등의 정의(안 제2조)

그린바이오산업의 개념을 종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 등과 관련된 제품·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그린바이오기업, 그린바이오소재 등 관련 개념을 명확히 함.

### 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기본 방향 및 목표, 산업화 촉진, 농업 연계강화 등에 관한 5년 단위 기본계획 등의 수립과 산업 실태조사, 통계마련 등을 규정함.

### 다. 그린바이오 산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전담기관의 지정, 전문인력 양성, 기술 개발 및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산업의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생성·수집·공유 및 데이터 플랫폼 공동 활용 기반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라. 그린바이오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안 제1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등에 종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 등 그린바이오제품의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마.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지정 및 지원(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지)

그린바이오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육성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육성지구 내 연구·개발·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시설의 설치, 소재 원료 공급시설 설치, 소재 원료 계약재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육성지구 내에 소재하는 국가·지자체가 소유하는 시설 및 부지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사용

- 수익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함.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촉진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그린바이오”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제1호의 생명공학과 관련된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그린바이오산업”이란 그린바이오를 활용하여 농업 등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과 관련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 · 생산 · 판매 ·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 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
  - 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동물용(이하 “동물용 의약품”이라 한다)
- 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으로서의 미생물

라.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 곤충

마.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천연물

바.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의 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분말, 액상 등 별도의 형태로 가공된 것(이하 “식품소재”라 한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그린바이오기업”이란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4. “그린바이오제품”이란 그린바이오를 활용하여 생산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5. “그린바이오소재”란 그린바이오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바이오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그린바이오제품 개발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린바이오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4.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린바이오 벤처 · 창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린바이오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그린바이오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그린바이오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담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관계기관 협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 그린바이오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바이오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린바이오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벤처·창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그린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벤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벤처기업”을 말한다)·창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창업을 위한 시설 등 공간의 임대·제공
3. 그린바이오제품의 실증 및 시제품 생산
4. 그린바이오제품의 판로 확보 및 홍보 지원
5.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및 경영·컨설팅 지원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데이터 활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유전체 정보 등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생성·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에 관한 표준화
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생성, 수집, 보존 및 전송
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공유, 공동 활용 및 거래
4.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플랫폼의 공동 활용 기반 구축
5.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우선구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그린바이오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린바이오제품

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그린바이오제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2. 농업 관련 단체 등

③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종자,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 등 그린바이오제품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 ·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육성지구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에 관한 사항

2. 육성지구의 구체적 조성 방안 및 재원 확보방안

3. 대학·기업·연구기관 등의 집적방안

4. 연구·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장비·시설의 확충방안

5. 그 밖에 육성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해당 육성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의 타당성 및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육성지구의 명칭·위치·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육성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성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육성지구 조성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사업·지연·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⑨ 육성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지정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육성지구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지구에서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그린바이오제품의 연구·개발·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시설의 설치
2. 그린바이오소재 등의 공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3. 그린바이오소재 원료의 계약재배 지원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구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육성지구에 있거나 육성지구로 이전하는 그린바이오기업에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제27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육성지구의 시설 및 부지에 대하여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17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2. 제9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3. 제14조에 따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지정 해제

제18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